

대구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가합2005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혁

피고1. B

2. C

3. D

4. E

5. F

6. G

7.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탁, 신유진

변론 종결2024. 5. 16.

판결 선고2024. 5. 30.

주 문

1. 주식회사 I의,

가. 피고 B에 대한 2022. 11. 18. 93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1) 를 430,147,882원의 한도 내에서,

나. 피고 C에 대한 2022. 11. 18. 415,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191,947,711원의 한도 내에서,

다. 피고 D에 대한 2022. 11. 18. 49,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22,663,705원의 한도 내에서,

라. 피고 E에 대한 2022. 11. 18. 2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9,250,492원의 한도 내에서,
마. 피고 G에 대한 2022. 11. 18. 59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272,889,517원의 한도 내에서,

바. 피고 H에 대한 2022. 11. 18. 501,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231,724,827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30,147,882원,

나. 피고 F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430,147,882원 중 383,895,422원,

다. 피고 C는 191,947,711원,

라. 피고 G는 272,889,517원과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191,947,711원 중 138,757,381원,

마. 피고 D은 22,663,705원,

바. 피고 E는 9,250,492원,

사. 피고 H은 231,724,8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원고는 건축자재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는 건설업(토목, 건축)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은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D, 피고 E는 피고 B의 아들, 피고 F, 피고 G은 피고 B의 친구, 피고 H은 I의 재무담당 이사이다.

나. 원고의 I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I의 공사현장에 철자재 등을 납품하였으나 아래의 표와 같이 그 대금 합계 1,158,624,13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미수금채권'이라고 한다).

1	대구 남구 K 신축공사	신축공사	2022.06.25.	115,186,951원
2	대구 달서구 L 신축공사	신축	2022.07.22.	194,959,583원
3	대구 동구 M 신축공사(형틀용품) 동 (안전용품)	신축	2021.12.20.	104,010,542원
2022.11.18.	282,192,897원			
4	대구 수성구 N 신축공사(형틀용품) 동 (철근용품) 동 (안전용품)	신축	2022.11.19.	42,381,410원
2022.11.18.	107,079,389원			
2022.11.15.	2,117,776원			
2022.11.11.	10,471,570원			
6	대구 서구 O 신축공사	신축	2022.11.18.	240,441,798원
7	대구 중구 P 신축공사(형틀용품) 동 (안전용품)	임대오피스텔	2022.11.18.	29,314,377원
2022.11.09.	5,415,700원			
8	대구 동구 Q 신축공사(형틀용품) 동 (안전용품)	신축공	2022.11.17.	24,321,643원
2022.11.15.	730,500원			
합계금	1,158,624,136원			

2) 이에 원고는 2022. 11. 22. 대구지방법원에 I을 상대로 위 미수대금 합계 1,158,624,136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22. 11. 23. 대구지방법원 2022차전19052호로 지급명령결정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2. 12. 10. 확정되었다.

다. I의 기성금 수령 및 금원지급행위

1) I은 2022. 11. 18. 원청사인 주식회사 R으로부터 건설공사에 따른 기성금

2,821,300,000원(이하 '이 사건 기성금'이라고 한다)2) 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다음 표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피고들에게 각 금원을 지급한 행위를 '피고 ○○○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라고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고 한다).

0	2022-11-18[13:02:18]	2,821,300,000		S주식회사
1	2022-11-18[13:06:24]		830,000,000	피고 B(1차)
2	2022-11-18[13:06:25]		590,000,000	피고 G
3	2022-11-18[13:06:26]		73,000,000	피고 H(1차)
4	2022-11-18[13:06:27]		100,000,000	피고 B(2차)
5	2022-11-18[13:06:28]		415,000,000	피고 C
6	2022-11-18[13:06:29]		49,000,000	피고 D
7	2022-11-18[13:06:29]		20,000,000	피고 E
8	2022-11-18[13:16:14]		428,000,000	피고 H(2차)
		2,821,300,000	2,505,000,000	

2) 피고 B은 2022. 11. 18. I로부터 830,000,000원을 지급받은 즉시 피고 F에게 위 8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C는 2022. 11. 13. I로부터 415,000,000원을 지급받은 즉시 피고 G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W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I에 대하여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I은 2022. 7.경부터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주식회사 R으로부터 이 사건 기성금을 수령한 직후 그 중 ① 930,000,000원을 피고 B에게, ② 415,000,000원을 피고 C에게, ③ 49,000,000원을 피고 D에게, ④ 20,000,000원을

피고 E에게, ⑤ 590,000,000원을 피고 G에게, ⑥ 501,000,000원을 피고 H에게 각 지급하였고, ⑥ 피고 B는 I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830,000,000원을 다시 피고 F에게, ⑦ 피고 C는 I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300,000,000원을 다시 피고 G에게 지급하였다. I의 이러한 금원지급행위는 피고들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거나, 설령 변제행위라고 보더라도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I로부터 각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이는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I에 대하여 이 사건 미수금채권이 있었으므로3), 이 사건 미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I의 채무초과상태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이 사건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불과 10여분 내에 연속하여 이루어졌고, 상대방은 I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그 가족, 친구들, 직원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의사에 따라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I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I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인 2022. 11. 18.경 I은 별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I의 T계좌내역에 의하면, I은 2022. 11. 18. 주식회사 R으로부터 이 사건 기성금 2,821,3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2,505,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이체하였고(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해당한다), 나머지 잔액 약 300,000,000원도 직원들의 급여, 4대 보험 등의 명목으로 곧바로 지출되어 거래 후 잔액 1,017,324원만이 남은 점, I은 원고에 대하여 2022. 7월분 대금 226,518,243원부터 그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무렵 합계 1,158,624,136원의 미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I은 2022. 10월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직장건강보험 등을 연체하고, 2022. 10월분부터 임금을 체납하기도 한 점, I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후 채무를 변제하기 못하여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2) 피고 B에 대한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는 증여행위에 해당하거나 일부 변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I이 피고 B과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우선 피고 B이 I로부터 1차로 지급받은 83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F에게 부탁하여 2020. 10. 21.부터 2022. 3. 30.까지 아래의 표와 같이 1,08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I에 대여하였으며, I에서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

2020. 10. 21.	100,000,000	100,000,000		F→B→I
2020. 11. 10.	200,000,000	200,000,000		F→B→I
2021. 1. 29.			200,000,000	I→B→F
2021. 2. 9.	200,000,000	182,000,0005) 3개월 선이자인 1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2,000,000원만을 입금.		F→B→I
2021. 5. 3.	200,000,000	200,000,000		F→B→I
2021. 6. 22.			200,000,000	I→H→F
2021. 7. 30.	200,000,000	200,000,000		F→B→I
2021. 12. 23.	100,000,000	97,000,0006) 선이자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입금		F→B→I
2022. 3. 30.	80,000,000	7,7600,0007) 선이자 2,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입금.		F→B→I
합계	1,080,000,000	1,056,600,000	400,000,000	

I, 피고 B, 피고 F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즉시 I에 이체되었음이 인정되는 한편, 이와 같이 피고 B이 피고 F으로부터 지급받아 I로 이체한 돈이 I에 대한 차용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I이 피고 B으로부터 1,08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I이 위 표와 같이 피고 B이나 피고 H를 통하여 피고 F에게 이체된 돈은 I이 피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이와 같은 피고 B에 대한 I의 금원 차용 및 변제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 B이 피고 F으로부터 차용하여 I에 대여한 1,080,000,000원 중 I이 40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남은 대여금은 680,000,000원(= 1,080,000,000원 - 400,000,000원)에 불과한데, 피고 B은 I로부터 그보다 150,000,000원을 초과한 83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F으로부터 2021. 6. 12. 1,000,000원, 2021. 7. 1. 20,000,000원, 2021. 7. 13. 12,000,000원, 2021. 7. 30. 50,000,000원, 2022. 3. 22. 10,000,000원 합계 93,000,000원8) 을 계좌로 이체 받고, 그 외에도 약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받아 이를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월 3%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830,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피고 F으로부터 2021. 6. 12. 1,000,000원, 2021. 7. 1. 20,000,000원, 2021. 7. 13. 12,000,000원, 2021. 7. 30. 50,000,000원, 2022. 3. 22. 10,000,000원 합계 9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피고 B이 위 돈을 피고 F으로부터 차용9) 하여 I로 대여하였다거나 실제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F이 현금으로 인출한 약 50,000,000원을 피고 B이 차용하였다거나 위 현금을 차용한 피고 B이 이를 I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더더욱 없다. 피고 B은 피고 F으로부터 정확히 얼마를 차용하여 그 중 얼마를 I에 다시 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막연히 이자 등의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산정하여 이를 I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피고 B은 이에 관한 정산 자료조차 만들어 두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I이 피고 B에게 지급한 돈 중 적어도 위 150,000,000원은 I이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피고 B이 2차로 지급받은 10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B이

X조합으로부터 2015. 3. 15.경 229,000,000원, 2015. 7. 9.경 21,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대출받아 이를 I에서 대여하였는데 그 중 100,000,000원을 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X조합으로 대출받은 위 돈을 I에 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5. 3. 11. 대구 수성구 Y아파트 Z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4,8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X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5. 3.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2014. 4. 7. 등기를 마친 채권최고액 269,1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AA(이하 'AA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14. 8. 7. 등기를 마친 채권최고액 16,9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AA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것으로 보아, 피고 B은 위 AA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을 변제하기 위해 X조합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¹⁰⁾ 따라서 피고 B이 X조합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I에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 B은 I의 대표이사로 누구보다 I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당연히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설령 피고 B이 I로부터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미수금, 직원들의 임금 등 I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I이 피고 B의 개인적인 채무를 위 채무들보다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I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I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였어야 함이 타당하다. 피고 B은 I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I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우선하여 변제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C, AB, E에 대한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및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는 I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배우자이고, 피고 AB, E는 피고 B의 자녀(특히 피고 AB은 I의 직원이기도 하다)로서, I의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C, AB은 수시로 I과 금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I의 계정별원장에는 피고 D으로부터 2020. 7. 9.자 이체 받은 25,000,000원만이 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밖에 차용증 등의 서류가 작성된 바도 없어 피고 C, AB로부터 I에 이체된 돈 전부가 I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특히 피고 C의 경우 I로부터

지급받은 415,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피고 G에게 이체하였으며, 피고 C가 피고 G에게 300,000,000원이라는 거금을 이체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설령 피고 C, AB, E가 I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I이 변제기 및 이자도 정해지지 않은 피고 C, AB, E에 대한 채무를 원고에 대한 미수금, 직원들의 임금 등 I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피고 C, AB, E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는 변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I이 피고 C, AB, E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 G에 대한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의 피고 G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는 변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I이 피고 G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G는 I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고등학교 친구이며, 피고 B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I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G는 I에게 2021. 10. 20. 49,000,000원, 2022. 1. 3. 145,500,000원, 2022. 2. 24. 291,000,000원, 2022. 3. 30. 38,800,000원, 2022. 4. 29. 47,300,000원을 이체하였고, I은 2021. 10. 20. 50,000,000원, 2022. 1. 3. 150,000,000원, 2022. 2. 24. 300,000,000원, 2022. 3. 30. 40,000,000원, 2022. 4. 29. 50,000,000원을 각 차용원금으로 하는 차용증11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차용증에는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고, '원금의 변제기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참하여 변제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변제기도 정해져 있지 않다.

다) I은 2022. 11. 18. 이 사건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수분 내에 피고 G에게 위 차용금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위 무렵 피고 G가 I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다거나 독촉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I이 특별히 피고 G에 대한 채무를 I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다른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할만한 이유도 찾기 힘들다.

5) 피고 H에 대한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의 피고 H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는 증여행위에 해당하거나 변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I이 피고 H과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H은 I의 직원이자 자금을 담당하고 있던 이사로 I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나) 피고 H은 2022. 2. 26. 피고 B의 부탁으로 I에 350,000,000원을 차용해주기로 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339,500,000원을 I에 이체하였으며, 2022. 6. 24. 그 중 50,000,000원을 변제 받았으며, 2022. 11. 18. 지급받은 돈 중 300,000,000원은 나머지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H이 2020. 2. 26. I에 339,500,000원을 이체한 사실, I이 피고 H에게 2022. 6. 24. 5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H은 I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서류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어떠한 조건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위 돈을 실제 I에 대여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고 H은 I로부터 2022. 11. 18. 300,000,000원이 아니라 합계 501,000,000원을 2차에 걸쳐 73,000,000원, 428,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받았는바, 변제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 설령 위 300,000,000원이 변제금이라고 하더라도 I이 피고 H에 대한 채무를 I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다른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할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라) 피고 H은 지급받은 501,000,000원 중 위 3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201,000,000원의 지급경위에 대하여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 H은 201,000,000원을 I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I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애초에 I의 돈을 그 직원인 피고 H의 계좌로 지급하여 지출해야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 H은 위와 같이 201,000,000원을 받은 직후 피고 B에게 72,277,515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H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돈을 지급받고 6일~24일의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I을 위해 일부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I은 재산을 은닉할 용도로 위 돈을 피고 H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6) 소결론 결국 I의 피고 B, C, D, E, G, H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는 I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I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채무자인 I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B,

C, D, E, G, H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 B으로부터 830,000,000원을 지급받은 피고 F, 피고 C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은 피고 G는 각 전득자에 해당하고 그 악의 역시 추정된다.

라.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F 가) 피고 F은, I의 피고 B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I로부터 그 계좌에 위 돈을 전자적 방식으로 이체 받아 피고 F의 소유의 다른 돈과 혼합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F이 피고 B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다시 취득한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I로부터 830,000,000원을 T 계좌로 이체 받은 직후 피고 F에게 500,000,000원, 330,000,000원 합계 830,000,000원을 이체하였으므로, 피고 B은 I로 지급받은 돈을 그대로 피고 F에게 이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I의 피고 F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 B은 수익자, 피고 B으로부터 위 돈을 그대로 이체 받은 피고 F은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피고 F은 피고 B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여 I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F은 피고 B에게 수억 원을 차용증도 없이 빌려줄 정도로 친분관계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은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고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 F은 피고 B에게 지급한 돈이 I에 지급되고 I이 변제한 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피고 F을 통하여 I의 재정상황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F은 피고 B에게 금원을 차용해줄 당시 일부 선이자를 지급받은 것 외에 이자를 정하거나 변제기의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11. 18. 피고 B으로부터 차용원금을 150,000,000원을 초과한 83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 B과 정산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의 주장만으로 악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머지 피고들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도, 피고들의 주장만으로 악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원상회복의 범위

1)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무자가 동시에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각기 금원을 증여한 결과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악화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증여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익자와 전득자와 공동피고가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수익자와 전득자의 가액배상 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가 현금의 증여 내지 변제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미수금채권이 1,158,624,136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I의 피고 B, C, D, E, G, H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 피고 B, C, D, E, G, H은 반환하여야 할 가액(피고 B 930,000,000원, 피고 C 415,000,000원, 피고 D 49,000,000, 피고 E 20,000,000원, 피고 G 590,000,000원, 피고 H 501,000,000원)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전득자 피고 F은 수익자 피고 B와 공동하여, 전득자 피고 G는 수익자 피고 C와 공동하여 각 그 반환하여야 할 가액(피고 F 830,000,000원, 피고 G 300,000,000원)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보전채권액을 피고들이 I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그 취소와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I의, 피고 B에 대한 2022. 11. 18.

93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12를 430,147,882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C에 대한 2022. 11. 18. 415,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191,947,711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D에 대한 2022. 11. 18. 49,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22,663,705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E에 대한 2022. 11. 18. 2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9,250,492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G에 대한 2022. 11. 18. 59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272,889,517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H에 대한 2022. 11. 18. 501,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231,724,827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B은 430,147,882원, 피고 F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430,147,882원 중 383,895,422원, 피고 C는 191,947,711원, 피고 G는 272,889,517원과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191,947,711원 중 138,757,381원, 피고 D은 22,663,705원, 피고 E는 9,250,492원, 피고 H은 231,724,8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채성호

판사박소민

판사배종빈

1) 원고는 주식회사 I의 각 피고들에 대한 증여계약 또는 변제행위의 사해행위가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청구취지를 주식회사 I의 각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행한다.

2) 갑 제2호증에 의하면 'S주식회사'로부터 I의 T 계좌로 위 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I은 기성금을

S은행 계좌로 지급 받고 이를 다시 I의 T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이 사건 미수금채권 중 순번 4 M 신축공사 현장에 납품한 안전용품의 최종거래날짜가 2022. 11. 19.이기는 하나, 원고는 위 그 전부터 위 현장에 자재를 계속적으로 납품해오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대금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다음 날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위 미수금채권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의 2023. 7. 19.자 준비서면 참조

5) 3개월 선이자인 1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2,000,000원만을 입금.

6) 선이자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입금

7) 선이자 2,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입금.

8) 피고들은 2024. 5. 17.자 참고서면으로 뒤늦게 위와 같이 구체적인 추가 대여내역을 특정하였다.

9) 피고 F이 피고 B에게 이체한 내역 중 2021. 7. 13.자 내역에는 'B이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2. 3. 22.자 내역에는 'B현금교환'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 F이 피고 B에게 빌려줄 의사로 위 돈을 이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0) 피고 B은 2014. 10. 29.경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2014. 4. 및 2014. 8.경 AA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I을 위한 것인 아님은 분명하다.

11) 피고 G는 각 차용원금과 실제 이체금액의 차액은 선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2) 원고는 주식회사 I의 각 피고들에 대한 증여계약 또는 변제행위의 사해행위가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청구취지를 주식회사 I의 각 피고들에 대한 '금원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행한다.